

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11. 1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19호로 2024년 10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동 및 신길3동주민센터 청사 이전으로 소재지를 변경하고, 조례에 명기된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동주민센터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및 현행화(안 별표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4. 9. 9.~10. 2./21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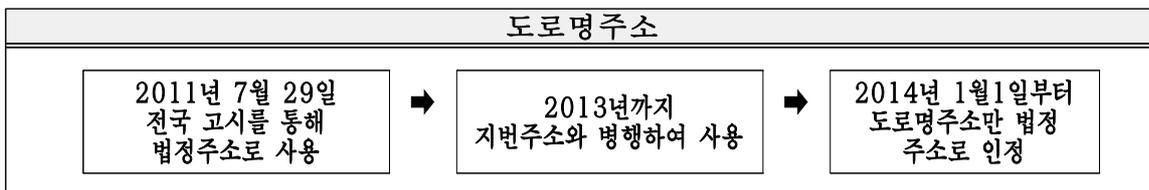
- 본 안건은 영등포동 및 신길3동주민센터의 청사 이전에 따라 해당 조례 별표의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,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주소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,
 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별표에서 영등포동 및 신길3동주민센터 청사 이전을 반영하여 주소를 변경하고, 전체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도로명주소를 현행화함.
 - 검토 결과
 - 본 안건은 영등포동(영등포로53길 22 → 양산로 232) 및 신길3동주민센터(신길로41라길 13-8 → 가마산로 483) 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안 별표의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1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청사 이전에 따

1) 제9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면·동은 행정면·행정동(行政洞)을 말한다.

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아울러,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²⁾ 체계로 주소가 일원화되어 전면사용됨에 따라 본 조례 별표의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병기된 지번 주소를 삭제하여 현재 도로명 주소 표기 방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2) 도로명주소 전면사용(출처:現행정안전부)

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9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면·동은 행정면·행정동(行政洞)을 말한다.